

신탁계약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다올마켓스타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변경시행 예정일: 2026년 7월 16일
3. 변경사항:
 - 종류 CF 수익증권 신설
 - 투자신탁보수 인출 시점 추가
4. 상세 변경사항:

정정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<생략>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그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3. <생략> <u><신설></u> <이하 생략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<현행과 같음>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그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3. <현행과 같음> <u>14.종류 CF 수익증권</u> <이하 현행과 같음>
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제24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기준)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~13. <생략> <u><신설></u> <이하 생략>	제24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기준)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~13. <현행과 같음> 14. <u>종류 CF 수익증권</u> 가. <u>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</u> 나. <u>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</u> 다. <u>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u> <이하 현행과 같음>

투자신탁보수 인출 시점 추가	제39조(보수) ①<생략>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<u><신설></u> 2.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3.<생략> <u><신설></u> <이하 생략>	제39조(보수) ①<현행과 같음>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<u>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u> 3.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3.<현행과 같음> 14. <u>종류 CF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6.73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0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0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7</u> <이하 현행과 같음>
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제40조(판매수수료) ①<생략>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	제40조(판매수수료) ①<현행과 같음>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

	급한 금액으로 한다. 1.<생략> 2.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, 종류 Cg 수익증권, 종류 Ci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CP 수익증권, 종류 CPe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S-P(퇴직) 수익증권 : 없음 3.<생략> ③<생략> ④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급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급한 금액으로 한다. 1.<생략> 2.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Ag 수익증권, 종류 Cg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, 종류 Ae 수익증권, 종류 CP 수익증권, 종류 CPe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S-P(퇴직) 수익증권 : 없음 <이하 생략>	급한 금액으로 한다. 1.<현행과 같음> 2.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, 종류 Cg 수익증권, 종류 Ci 수익증권, <u>종류 CF 수익증권</u>,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CP 수익증권, 종류 CPe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S-P(퇴직) 수익증권 : 없음 3.<현행과 같음> ③<현행과 같음> ④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급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급한 금액으로 한다. 1.<현행과 같음> 2.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Ag 수익증권, 종류 Cg 수익증권, 종류 Ce 수익증권 및 종류 Ci 수익증권, <u>종류 CF 수익증권</u>, 종류 Ae 수익증권, 종류 CP 수익증권, 종류 CPe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S-P(퇴직) 수익증권 : 없음 <이하 현행과 같음>
--	--	---